특집논문 | 도시와 권리

도시 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의미와 과제*

A Comprehensive Review on the Pertinence and Benefits Justice and Rights Discourse in Contemporary Urban Studies

강현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정의와 권리를 운동의 목표나 슬로건으로 삼는 다양한 도시사회운동들이 촉발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진보적 도시 학계에서도 정의와 권리 담론을 다루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자유주의적 이념과 정책이 세계적으로 득세하는데 대한 반발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정의와 권리 담론이 진보적 입장의 도시 연구에서 부각되고 있는 원인과 배경,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주요 논점들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도시의 중요한 과제가 바로 정의와 권리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도시 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도입 필요성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한다.

주요어: 정의, 권리, 담론, 도시 연구, 도시에 대한 권리

1. 머리말: 왜 도시에서 정의와 권리를 주장하는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철학 책인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정의와는 무관할 것 같은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론을 들고 나오는 등 우리 사회에 '정의'의 열풍

* 본 글은 2010년 12월 3일 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본인의 논문 「도시 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필요성과 과제」의 내용을 확대 보완한 것이다.

** 중부대학교 교수(khsooda@chol.com)

www.kci.go.kr

이 불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용산 참사,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양천경찰서 고문, 촛불시위 탄압, 국가인권위원회 파행 등 우리나라의 전반적 인권 수준이 계속 퇴행하면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인권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최근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은 복지가 국민의 권리인가 아니면 정부의 시혜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의와 권리에 대한 관심 증폭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정의와 권리에 대한 관심이 드높아지고 있다. 정의와 권리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는 배경은 상당히 복합적이지만, 크게 보면 경제성장과 경쟁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념과 정책이 세계적으로 득세하는데 대한 반발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에서 정의와 권리를 운동의 목표나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도시사회운동들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서구의 진보적 도시 학계에서는 정의와 권리 담론을 다루는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1)]

이 글의 목적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정의와 권리 담론을 우리의 진보적 도시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것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최근 정의와 권리 담론이 도시 연구에서 부각되고 있는 원인과 배경, 논의의 전개과정과 주요 논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도시의 중요한 과제가 바로 정의와 권리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도시 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도입 필요성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한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우리의 도시 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이

1) 최근 영미권의 도시 연구 분야, 즉 지리학이나 도시계획 분야에서 정의와 권리를 다룬 대표적인 글로는 Harvey, D.(2008, 2009); Marcuse, P.(ed.)(2009); Soja, E. W.(2010); Fainstein, S.(2010) 등이 있다. 최근 영미권 도시 연구에서 일찍이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던 프랑스 철학자 르페브르에 대한 뜨거운 재조명 분위기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www.kci.go.kr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의와 권리 담론은 신자유주의적 담론에 대항하는 대항 담론으로서 상당히 유용하다. 정의와 권리의 주장은 대중들에게 정서적, 경험적으로 공감대를 갖기가 쉽다. 또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요구와 운동들을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결속하기가 용이하다. 둘째,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할 수 있는 정의와 권리 담론의 구체성과 실천성을 담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공간규모(scale)가 바로 도시이다. 도시는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며 일상생활의 장소이다. 대중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각종 문제들은 대부분 도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정의와 권리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집행하던 공간 단위였던 국민국가 단위에 대한 회의가 일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가보다 더 큰 공간 차원인 세계적 차원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보다 작은 공간 차원인 도시 단위에서 정의와 권리가 주장되고 있다. 셋째, 현재 대다수 사람들의 일상생활 단위인 도시 단위에서 정의와 공간 담론이 확산되고 구체화될 때, 대중들의 일상생활에 기반한 잠재적 요구들이 표출되고 결집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사회운동이나 정책 개선을 통해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글의 내용은 이러한 잠정적 결론의 도출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제2장에서는 정의와 권리 담론을 다루고 있는 서구의 진보적 도시 연구의 흐름을 개관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도시 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의의와 유용성을, 제4장에서는 도시 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과제를 살펴본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도시 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적극적 도입을 제안한다.

www.kci.go.kr

2. 서구의 진보적 도시 연구에서 정의와 권리에 대한 관심

1) 정의에 대한 관심

현 시대 영미권의 정의 담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는 존 롤스(John Rawls)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롤스의 정의론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입장에 서 있지만 평등과 분배 정의를 옹호하는 입장이다.[2] 롤스의 정의론은 그 영향력이 큰 만큼이나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롤스보다 더 우파적인 자유주의자로 이른바 자유지상주의적 입장에 서 있는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은 롤스의 평등과 분배 정의 옹호 입장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하였다.[3] 이와는 반대로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 마이클 샌델 등 공동체주의적 입장에 있는 학자들이나,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등과 같이 형식적 자유나 권리보다 실질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capability)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롤스의 정의론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4] 이보다 더 급진적 입장에 서 있는 마르크스주의자, 여성주의자, 다문화주의자들 역시 롤스의 정의론을 그가 기반하고 있는 자유주의 이념과 함께 비판하였다.

영미권의 진보적 도시 연구자 중 본격적으로 정의 담론을 다룬 대표

---

2) 존 롤스의 정의의 제1원칙은 각자가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존 롤스의 정의의 제2원칙은 다음 두 가지이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될 때 허용되며,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직책과 직위가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awls, 1971, 황경식 역, 2003 참조).

3) 존 롤스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욱 중시하는 로버트 노직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하기 위해 쓴 책이 *Anarchy, State, and Utopia*이며, 공동체주의적 입장에 서 있는 마이클 왈저가 로버트 노직과 논쟁하면서 쓴 책이 *Spheres of Justice*이다. 이 글의 뒤에 수록된 참고문헌 참조.

4) 센은 자유를 간섭의 부재로 보지 않고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 마사 너스봄(Martha Nussbaum)의 입장도 센과 유사하다.

www.kci.go.kr

적인 학자는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이다. 1973년 출판된 『사회정의와 도시』에서 하비는 영미권 공간 연구에서 처음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연구에서 정의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이 책에서 하비는 자유주의적 입장과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각각 도시에서 나타나는 부정의와 차별을 날카롭게 분석하였는데, 그의 분석 결론은 도시 공간이 일상적으로 부자에게 유리하고 가난한 이들에 불리한 분배 효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 공간이 사회적 불평등을 생산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Harvey, 1973). 이후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공간 연구에 몰두한 하비는 정의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표방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 지구적 환경 문제의 대두, 포스트모더니즘의 확산, 차이를 강조하는 여성주의적 시각 등을 새롭게 추가하여 그의 정의론을 확대 심화시켰다(Harvey, 1992; 1996). 즉 처음에는 자본주의에서 도시의 작동 방식과 지역 불균등 발전 문제에서 출발했던 그의 정의에 대한 관심이 점차 자연환경, 정체성, 차이, 지구화의 영역까지 확장된 것이다.

도시나 공간을 직접적인 연구 주제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훗날 도시에서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이가 여성주의 정치철학자 아이리스 영(Iris Young)이다. 영은 일찍부터 동질성을 강조하는 공동체 개념에 회의를 가지고 대신 이질성과 다양성을 중요시하였는데, 도시가 바로 이질성과 다양성의 장소라는 점에 주목했다(Young, 1986). 이후 영은 정의나 부정의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구조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정의는 지리적·역사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공간적 맥락에서 정의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에 대한 영의 관점이 집대성된 것이 1990년 발간된 그녀의 책 『정의와 차이의 정치』이다. 여기서 영은 부정의를 규정하는 중요한 두 가지 사회적 조건으로 분배 대신에, 억압(oppression), 즉 자기 발전의 제도적 제약과, 지배(domination) 즉 자기 결정의 제도적 제약을 들었다. 그리고 이와 맞서 싸

www.kci.go.kr

우기 위해서는 차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Young, 1990). 영은 부정의를 초래하는 억압의 원천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중시했던 대성된 착취 이외에도 주변화, 무력감, 문화적 제국주의, 폭력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5] 영이 제안한 대안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결과로서의 분배 정의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과정으로서의 정의, 즉 불평등과 불공정을 창출하는 구조적 힘에 더 많은 비판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억압받는 집단이 의사결정 과정에 완전히 효과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다양한 형태의 억압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의의 목표로 평등보다는 차이와 연대를 강조했다. 영에게 있어서 정의란 차이를 없애버리는 획일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 없이 집단 간 차이를 존중하고 그 차이를 촉진하는 제도를 요구하는 것이다(Young, 1986; 1990).[6]

한편 또 다른 여성주의 정치철학자인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 역시 영과 마찬가지로 분배에 치중하는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적 정의론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프레이저는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자원의 편중된 분배를 완화하려는 재분배 투쟁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지배를 극복하려는 노력, 즉 인정(recognition) 투쟁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레이저가 말하는 문화적 지배란 경제적 차원인 계급 때문이 아니라 문화적 차원인 신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신분 질서로 인한 차별이나 배제, 주류 지배 문화가 사회적 규범이 되어서 그렇지 못한 비주류 문화를 억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신분 질서의 철폐, 문화적 다양성과 소수 집단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

5) 영이 구분한 억압의 다섯 가지 측면은 경제적 착취, 주변화, 무력감, 문화적 제국주의, 폭력이다(Young, 1990).

6) 이후 영은 정의의 관점을 주거지 격리나 지역주의 같은 공간 현상에 도입하는 연구들을 이어나갔으나(Young 2000), 아쉽게도 2006년 이른 나이에 사망하면서 공간 문제와 관련된 더 이상의 성과를 후학들에게 전해 주지 못했다.

www.kci.go.kr

이 필요하다(Fraser, 1995; 1998).[7] 이처럼 경제적 착취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춘 정통 마르크스주의 정의론의 한계를 지적한 영과 프레이저 같은 여성주의자들의 시각은 도시 연구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진보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8]

지리학 분야에서 데이비드 하비에 이어 정의를 주제로 꾸준히 연구한 학자는 '도덕적 지리학'을 주창한 데이비드 스미스(David Smith)이다(Smith, 1994; 2000a; 2000b; 2000c). 스미스는 사람들의 의지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지리적 불평등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의 용어로 '행운의 장소(the place of good fortune)'와 '불운의 장소'가 존재하는 것에서부터 부정의가 발생한다고 본다. 어떤 장소는 비옥한 토지나 귀중한 자연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런 행운의 장소에서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그렇지 못한 불운의 장소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선천적으로 얻은 행운 혹은 불운이 초래하는 부정의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 지리학의 과제이다. 이러한 부정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운의 장소에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노력이 아니라 운에 의해 좌우되는 삶의 수준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격차에서 비롯된 부정의를 완화시키는 평등화(equalization) 노력이 필요하다.[9]

---

7) 최근 프레이저는 지구화 시대에 들어와 분배적 부정의에 대항하는 재분배 투쟁, 문화적 신분적 부정의에 대항하는 인정 투쟁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오늘날과 같은 지구화 시대에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기존의 국민국가 단위로 구성된 정치적 대표와 국민국가 단위의 문제 해결 절차를 가지고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분배 및 인정 투쟁에 덧붙여 지구화 시대의 상황에서 재분배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대표와 절차를 확보하려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 프레이저의 최근 주장이다(Fraser, 2005, 2008, 2009).

8) 아이리스 영과 낸시 프레이저 같은 여성주의자들이 기존의 근대적 사고를 비판하고 제시한 대안적 사고들에 대해 간결하게 정리한 글로 장미경(1999)을 참조할 수 있다.

www.kci.go.kr

최근에 들어와 히더 캠벨(Heather Campbell), 수잔 파인스타인(Susan Fainstein), 피터 마르쿠제(Peter Marcuse), 에드워드 소자(Edward Soja) 등 영미권의 대표적인 진보 도시 연구자들이 정의와 관련된 논문과 책들을 속속 출간하면서 도시 연구에서 정의 담론의 열풍이 불고 있다. 파인스타인은 탈산업화와 세계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서구의 도시들에서 오로지 경쟁력 강화 및 경제 성장 촉진만을 강조하는 담론이 지배하고, 그러한 경쟁력과 경제 성장의 최종적 목표가 무엇인지, 성장의 혜택이 어떻게 분배되고 사회적 형평성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데 대한 반발이 최근 정의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배경으로 설명한다(Fainstein, 2010: 1~3). 소자 역시 최근의 세계화, 경제 구조조정, 신기술 발달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계층 간·인종 간 불평등이 증가하고 사회적·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정의를 목표로 하는 사회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Soja, 2010: 20~23).

2) 권리에 대한 관심

서구의 진보적 도시 연구에서 권리에 대한 관심의 촉발은 프랑스의 철학자인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로부터 비롯되었다. 1968년 당시 프랑스를 휩쓴 68운동의 와중에 르페브르는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도시가 제공하는 편익을 누릴 권리, 도시 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권리,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를 스스로 만들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에 대한 권리(*le droit a la ville*)』라는 제목의 얇은 책을 출간했다.[10] 이 책에

9) 스미스는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표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한 평등보다는, 평등을 추구하면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과정, 즉 평등화를 강조했다.

10) Lefebvre, H. 1968. *Le droit* à *la ville*. Paris: Anthropos. 이 책은 1996년이 되어서야 Kofman과 Lebas에 의해 영어로 번역 소개되었다. Kofman, E. and Lebas, E. (eds and translators). 1996. *Writings on Citie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www.kci.go.kr

담긴 내용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난해한 철학적 개념이었지만, 이 책의 제목은 1968년 프랑스 전역을 휩쓴 시위에서 대중이 호응하는 매력적인 구호가 되었다. 이후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앞세운 도시사회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남미 브라질 등에서는 주거권 운동과 결합하여 도시 빈민의 주거 문제 해결에 상당한 성과를 낳았다(강현수, 2009).

최근 진보적 도시 연구에서 르페브르의 재조명 바람이 불면서, 도시 연구에서 권리 담론 역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르페브르가 주창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이 실천적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도시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 헌장(The European Charter for the Safeguarding of Human Rights in the City)」을 2000년에 만든바 있고, 현재 유럽 350여 개 이상의 도시들이 이 헌장을 비준하고 도시 행정에서 실천하고 있다. 이 헌장의 주요 내용은 1948년의 유엔인권선언 및 1950년의 유럽인권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근거한 것으로, 인권 보호에 있어서 도시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 차원의 움직임 외에도 개별 도시 차원, 각 나라 차원, 세계적 차원에서 도시에서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들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 차원에서는 바르셀로나, 몬트리올 같은 도시들이 시민들의 권리 확충을 위한 선구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UN산하 기관인 유네스코와 유엔-해비타트에서도 "도시에 대한 권리"를 핵심적인 활동 목표로 선정하여 보다 정의롭고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담론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 관련 운동단체들이 서로 연대하여 지속가능성, 민주주의, 평등, 사회정의의 원칙 속에서 도시의 평등한 이용권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는 가칭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 헌장(the World Charter of the Right to the City)」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비슷한 움직임이 진보적 성향의 세계 도시 연합체 차원에

www.kci.go.kr

서도 진행되고 있다.[11] 미국에서도 범국가적 도시 운동 네트워크인 '도시에 대한 권리 연대(the Right to the City Alliance)'가 결성되어 주택, 인권, 도시 토지, 지역사회 개발, 시민 참여, 환경정의 등과 관련된 운동을 추구하고 있다.[12]

이처럼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이 실천 운동 차원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학계에서도 여러 학자들이 르페브르가 1968년 당시 프랑스 파리를 대상으로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주창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지금 시대의 상황에 맞게 정교화·구체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영미권 마르크스주의 도시 연구의 선도자이자 르페브르의 공간 사상을 영미권에 처음으로 소개하기도 했던 데이비드 하비가 앞장서서 오늘날과 같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이 중요한 이유를 다시금 환기시켜 주고 있다(Harvey, 2003; 2008; 2009). 그리고 미첼, 디켈, 퍼셀 등 젊은 소장 학자들이 뒤를 이어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현대적 시각에서 조명하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Mitchell, 2003; Dikeç, 2001; 2002; Purcell, 2003; 2008 등). 미국의 온건 진보 노선의 도시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인 프리드만 역시 도시에서 시민들의 권리를 강조하는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Friedmann, 1987; 2002). 앞서 언급했던 아이리스 영은 차이와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를 강조했고, 또 정의 구현을 위한 권리의 중요성을 설파했다는 측면에서 진보적 도시연구에서 정의 담론뿐만 아니라 권리 담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도시에서의 권리 담론과 실천이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파생된 도시 빈민들의 생존권적 요구, 즉 주거권과 같은 사회경제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생존권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11)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천 운동들의 개요에 대해서는 강현수(2009) 참조.

12) 미국의 '도시에 대한 권리 연대(the Right to the City Alliance)' 활동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이 단체 홈페이지 http://www.righttothecity.org 참조.

www.kci.go.kr

한 선진국의 경우 최근 세계화 과정과 맞물려 선진국의 도시로 몰려드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그 사회 속에 포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새로운 시민권(citizenship)의 필요성 차원에서 권리 담론이 활용되고 있다(강현수, 2010b: 51). 즉 국민 국가에 기반한 근대적 의미의 시민권이 세계화 시대 이주자의 증가로 그 한계에 봉착하면서, 대안적 시민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때 도시 단위가 국가 단위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민권의 공간적 단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홀스톤은 국가보다 도시가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공동체가 되고, 도시에서의 거주자가 이 공동체 소속의 자격 기준이 되며, 도시 생활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권리 주장이 시민권의 내용과 실체가 될 때, 이른바 '도시 시민권(urban citizenship)'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Holston, 2001). 시민권의 단위로서 국가 단위보다 도시 단위가 더 의미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일상생활의 문제들에서 국가보다는 도시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시 시민권 논의는 세계화 시대 국가 단위의 시민권이 약화되면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대안적 시민권 논의들 중의 하나이다. 사실 대안적 시민권 주장은 지금의 국가 단위의 시민권을 배제하자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소속감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도시 시민권 주장은 도시라는 같은 장소에서 일상생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적 소속감과 책임성을 가지자는 것이다.

3) 정의와 권리 운동 및 담론의 수렴

최근에 들어와서는 도시 차원의 운동 영역에서 정의의 주장과 권리의 주장이 겹쳐지면서 상호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공간정의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과 도시 공간에서 민주적 권리를 찾고자 하는 운동이 서로 수렴되고 있다. 이론적 영역에서도 정의 담론과 권리 담론의 수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Soja, 2010: 6~7).

www.kci.go.kr

실천운동 차원뿐만 아니라 이론적 차원에서 정의 담론과 권리 담론이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담론이 상당히 공통된 기반과 지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 두 담론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떤 시대 어떤 국가에서도 그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도덕적 개념이다. 또한 두 담론 모두 단순한 욕구와는 대비되는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나 이해와 관련된다. 또 정의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도움이나 보호가 필요하며 강제성을 띠고 있는 의무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 정책이나 제도와 결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두 담론은 어떠한 개인의 행위, 혹은 그 사회의 제도나 정책을 정당화하거나 비판하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Smith, 1994: 42; Peffer, 1990: 366).

또 이 양 담론은 서로 보완적이다. 정의의 기준이 없다면 각자의 무조건적인 권리 주장은 상호 모순과 충돌이 불가피하며, 결국은 힘센 자들의 특권이 약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의 담론이 결합되어야 권리 담론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의가 분배 정의뿐만 아니라, 부정의를 만드는 구조나 의사결정에 대한 투쟁과 참여라고 할 때, 정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권리 개념이다(Young, 1990).

실천을 강조하는 차원에서도 이 두 담론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이 양 담론의 기반과 지향 자체가 수직적, 위계적이 아니고 수평적이다(Henderson and Waterstone, 2009: 200). 또한 두 담론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문제 영역과 다양한 주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방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담론이다. 즉 이 두 담론은 해결해야할 문제의 영역으로서 자본주의의 경제적 착취에만, 해결의 주체로서 노동자계급만을 강조하는 교조적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실천 담론보다 더 광범위한 사회적 동원력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부정의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바로 사회 변혁을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권리 담론과 결합된 정의 담론은 매우 강력한 정치적 선동 기능을 담당했다(Harvey and Potter, 2009: 41).

www.kci.go.kr

3. 진보적 도시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유용성

그런데 아이리스 영이 강조한 것처럼, 정의와 권리 담론 모두 사회적, 지리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 의미를 띤다. 즉 정의나 권리에 대한 만고불변의 고정된 객관적 기준이 없는 것이다. 또한 정의와 권리 담론은 각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많다. 특히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 자유주의적 입장과 사회주의적 입장에서는 정의나 권리를 보는 시각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정의로운 사회란 국가의 개입이 적고 자유 시장이 잘 작동하는 사회이다. 반면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의로운 사회는 경제적·사회적 평등이 구현된 사회이다. 권리에 대해서도 각 입장에 따라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 보수적 입장에서는 자유권을 중시하며, 특히 소유권을 중시한다. 진보적 입장에서는 사회권을 중시한다.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각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데 비해, 사회주의적 입장에서는 집단의 권리를 강조한다.

이처럼 각 입장에 따라 그 의미와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 때문에 정의와 권리 개념을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있다. 단적인 예로 고대 그리스 소피스트 트라시마쿠스(Thrasymachus)는 정의란 더 강한 자의 이익, 즉 지배계급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냉소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마르크스나 엥겔스 역시 권리란 지배 계급 혹은 부르주아의 권리에 불과하다고 폄하한 바 있다.

전반적으로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는 정의 담론이나 권리 담론 모두 자본주의의 근본 문제 해결을 포기한 보수적 담론으로 치부하였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교조적 마르크스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여러 진보적 이론가들은 정의와 권리 담론의 진보적 측면을 부각하면서 그 실천적 유용성을 강조해왔다. 대표적으로 칼 폴라니(Karl Polanyi), 클로드 르포르(Claude Lefort), 에티엔 발리바르(Étienne Balibar), 어네스토 라클라우(Ernesto Laclau)와 샹탈 무페(Chantal

www.kci.go.kr

Mouffe) 등은 시민들의 권리를 확대 심화시키는 것이 곧 진보의 지향점이며, 따라서 권리에 대한 주장이 진보적 실천 운동에서 상당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13]

정통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정의 개념과 관련해서도 부르주아의 이해관계를 은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하거나, 정의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계급에 기반한 경제적 측면의 재분배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계급 이외의 불평등의 요인, 예를 들어 성(性), 인종, 종족 등 계급으로 환원되지 않는 다른 형태의 불평등이 부정의를 낳는 원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보다 다양한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앞서 살펴본 아이리스 영이나 낸시 프레이저 등 여성주의자들은 경제적 착취에 따른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사회주의적 정의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문화적 지배 혹은 신분 질서에 따른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차이에 대한 인정(recognition)의 중요성을 덧붙였다. 나아가 프레이저는 국민국가 단위의 공간에서 적용되었던 기존의 정의론이 세계화 시대에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 ―예를 들어 국민국가 단위의 정치적 대표성이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기업의 횡포를 제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정의론. 즉 정치적 대표의 개념이 정의론에 새롭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Frazer, 2008; 김원식 역, 2010).

정통 마르크스주의에서 폄하되었던 정의와 권리 담론이 다시금 유용성을 갖게 된 것은 이처럼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문제의식에서 제대로 포착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 영역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 환경 영역 등에서, 계

13) 폴라니는 시장 경제 체제가 제약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시민들의 여러 권리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누구나 적절한 조건의 일자리를 얻을 권리를 강조했다(칼 폴라니 지음, 홍기빈 역, 2009: 592~597 참조). 나머지 학자들이 권리 담론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했는지에 대해서는 강현수(2010b: 89~97) 참조.

www.kci.go.kr

급 갈등뿐만 아니라 인종, 성, 종교, 세대, 성적취향 등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들이 나타나고, 문제와 갈등의 영역이 다차원적이 되고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진보적 실천 운동도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분화되었다. 하지만 각 영역으로 분화된 실천 운동이 자본주의와 맞서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에 대응하기에는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각 영역으로 분화된 사회운동들이 각기 자기 고유의 운동 영역을 고수하면서도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도전에 맞서 연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때 정의와 권리 담론은 다양한 문제 영역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하는 목표가 상이한 다양한 주체들을 느슨한 연대로 묶을 수 있다. 즉 신자유주의 담론에 대항할만한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대안 담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담론 모두 모호하다는 특성이 있지만, 또한 다차원적인 운동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개방성과 포용성,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의에 대한 요구는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강조했던 경제 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즉 정의의 이름으로 경제 정의뿐만 아니라 문화 정의, 환경 정의, 공간 정의를 주창할 수 있다. 공간 규모(scale)에 있어서도 동네 단위에서부터 도시적,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규모로 확장가능하다. 국지적 차원에서 정의가 논의될 수 있는 한편 세계적 차원에서 정의가 논의될 수 있고 이 양 스케일의 논의가 상호 결합될 수 있다. 권리에 대한 요구 역시 마찬가지다.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에서부터 사회 경제적 권리에 이르기까지 권리의 스펙트럼은 넓으며,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권 등 지금까지는 없던 새로운 권리들이 계속 발굴될 수 있다. 권리 주장의 공간적 규모 역시 작은 동네 단위에서 세계적 단위로 확장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양한 분야, 다양한 공간 규모에서 다양한 운동 주체들을 하나로 묶는데 있어서 정의와 권리 담론은 매우 유용한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라클라우와 무페의 주장처럼 보수주의의 반동에 대항

www.kci.go.kr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투쟁을 하나의 투쟁으로 동화시키기보다는 "민주주의적 등가들의 연쇄(chain of equivalence)"에 따라 서로 헤게모니적으로 접합시켜야 한다고 할 때(Laclau and Mouffe, 1985; 김성기 외 역, 1990: 185~225),[14] 이러한 연쇄의 고리가 바로 정의와 권리 담론이 될 수 있다.

최근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이에 대한 연대적 대응의 필요성이 사회적 실천의 측면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유용성을 높이는 배경이라면, 도시화 및 세계화 추세의 가속화는 특히 도시라는 공간 단위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유용성을 높이는 배경이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에서 지금과 같은 속도의 도시화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경우 조만간 인류 대다수가 도시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의와 권리의 요구가 수렴되고 해결될 수 있는 공간 단위로서 도시의 중요성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도시는 정의와 권리의 문제가 대중들의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체험될 수 있는 공간 규모이다. 또한 도시는 도시정부가 의미 있는 권력을 가질 만큼 충분히 큰 규모이면서도, 사람들이 정치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는 충분히 작은 규모이다(Connolly and Steil, 2009: 6). 도시보다 작은 동네 단위라면 민주주의의 기회는 증가하겠지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너무 작다. 도시보다 공간규모가 확대된다면, 행사 가능한 권력은 커질 수 있겠지만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든다(Fanistein, 2009: 21). 물론 모두 다른 공간 규모의 지원이 없으면, 특히

14) 라클라우와 무페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자유주의와 반민주주의가 접합되어 나타나는 반동 상황 — 대표적인 예로 복지국가를 해체하려고 한 레이건이나 대처의 프로젝트 — 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헤게모니적으로 접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민주주의적 권리의 행사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때 민주주의적 권리란 개인적 차원에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 차원에서 행사되는 권리이며, 타인들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Laclau and Mouffe, 1985; 김성기 외 역, 1990: 224).

www.kci.go.kr

국민국가 단위의 지원이 없다면 정의나 권리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규모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자원 배분이 가능한 단위이다. 도시의 공공 공간 계획, 도시 재개발이나 도시 서비스 전달 체계 같은 정책 영역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세계화의 가속화는 국민 국가 단위로 편성되었던 기존 질서, 즉 이른바 베스트팔렌(Westphalian) 체제가 그 한계에 봉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정의나 권리가 주장되고 실현되는 공간 단위는 국민국가 단위였다. 그러나 세계화 과정은 문제 발생의 장소이자 문제 해결과 투쟁의 단위로서 국가의 역량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제 문제들은 세계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해결도 또한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5] 하지만 아직까지 세계적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올바른 방안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정의와 권리가 세계적 차원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세계적 차원에서 정체성과 소속감, 집합적 연대감이 형성되고 이에 기반하여 책임과 의무가 뒤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 국가 단위에서 조직되었던 시민권(citizenship)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비록 세계 단위의 시민권에 대한 많은 논의가 무성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못하다. 즉 세계적 차원에서 정의와 권리의 주장과 운동은 가능하지만, 그 해결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는 연대와 호혜적 멤버십을 형성하기가 아직은 어렵다. 이 때 영역적 경계가 없는 세계 단위보다 영역적 경계가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도시가 새로운 형태의 연대와 멤버십의 단위가 될 수 있다(샹탈 무페, 곽준혁, 2009: 172~174). 즉 사회적 통합의 단위로서 국민국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도시 단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15) 국민국가 단위의 시민권의 한계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논의들이 있다. 이에 대해 잘 소개한 책으로는 Faulks, K. 2000. *Citizenship*, Routledge. 키이스 포크, 이병천 외 옮김. 2009.『시민정치론 강의: 시티즌십』, 아르케. 제6장 내용을 참조.

www.kci.go.kr

4. 진보적 도시 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과제

이제부터 진보적 도시 연구가 정의와 권리 담론을 통해 지향해야 할 과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정의와 권리 담론은 공통점이 많고 또 최근 상호 수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담론의 과제를 따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양 담론과 관련된 과제를 각각 살펴보도록 한다.

1) 정의 담론과 관련된 과제

스미스는 정의롭지 못한 지리를 노출시키는 것이 보다 정의로운 사회구조를 발전시키는데 핵심이 된다고 했다(Smith, 1994). 진보적 도시연구에서 정의 담론의 첫 번째 과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무엇이 정의롭지 못한 상태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데이비드 하비가 1973년 『사회정의와 도시』에서 수행했던 작업도 도시 공간에서 부정의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자본주의는 생산영역에서 착취라는 형태로 부정의를 발생시키는 동시에 도시나 공간 영역에서도 자본주의적 방식이 지배적으로 관철됨에 따라 여러 가지 부정의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이윤최대화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 그로 인한 임대료 상승,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도시 추방이라는 공간 부정의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소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정의롭지 못한 공간이 생산되고 있고 이것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도시 연구에서 정의 담론의 과제라고 주장한다(Soja, 2010: 31~33). 첫 번째는 경계 만들기와 공간의 정치적 조직을 통하여 정의롭지 못한 지리가 외부적으로 창출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제국주의 국가의 편의대로 식민지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나 게리맨더링 같은 정략적 선거구 획정이다. 두 번째는 다양한 주체들의 일상적 활동을 통해서 정의롭지 못한 지리가 내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차별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차별을 유

www.kci.go.kr

<표 1> 소자가 분류한 부정의(不正義) 지리의 발생 사례

○ 외부적 힘에 의한 인위적 경계 만들기와 공간의 정치적 조직에 따른 부정의 지리
- 프랑스 파리의 방리유(banlieue) - 파리 교외지역에 외국인 이주자들의 집중과 격리, 최근 인종 폭동 발생
-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인위적 국경 분할과 제국주의 편의에 맞춘 공간 구조
- 선거구 구획에 있어서의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백 차별 및 분리 정책(Apartheid)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구역 점령과 정착촌 건설
- 안전에 집착하는 도시. 대표적인 예로 상류층만의 폐쇄 구역(gated community)
- 공공공간의 축소와 토지의 사적 소유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

○ 다양한 주체들의 자연스러운 공간 이용에 따라 내생적으로 발생하는 공간 차별
- 소득 수준, 인종에 따른 지리적 격리와 차별
- 각 구역별, 지역별 공공 서비스의 격차(지하철, 공원, 학교 등등)
- 환경 유해 시설의 차별적 입지

○ 지역 간 불균등 발전
-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불균등발전
- 초국적 지역주의와 유럽연합 형성 과정
- 일국 내부의 지역 격차

이상 출처(Soja, 2010: 32~56).

발하는 계층 간, 인종 간 주거지 격리 현상, 부자 동네에 좋은 병원, 좋은 학교, 좋은 교통시설이 집중하고 가난한 동네는 이러한 도시 서비스의

www.kci.go.kr

혜택을 보지 못하는 현상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 번째는 지리적 불균등 발전의 문제이다. 세계적 차원의 불균등 발전에서부터 일국 내의 지역 격차까지 지리적 불균등 발전은 필연적으로 공간 부정의를 발생시킨다.

같은 맥락에서 디켈은 부정의한 공간이 폭로되어 시민들의 시위나 폭동, 사회 운동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부정의한 공간의 문제가 은폐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있는 기업이 노동자를 탄압하거나 해고하는 경우 사회문제가 되지만, 시골에 있는 기업이 같은 악행을 저질러도 여론의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기업은 노동 통제의 수단으로 기업 입지를 대도시에서 시골로 옮기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바로 부정의한 공간이 생산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디켈은 부정의가 공간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공간을 통해 부정의가 생산, 재생산 되는 점에도 주목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부정의의 공간적 표출과 함께, 공간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정의에도 주목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Dikeç, 2001).

최근 정의로운 도시와 정의로운 도시계획에 관한 일련의 글들을 발표한 파인스타인은 정의롭지 못한 뉴욕시 도시계획의 대표적 사례로 브롱스 터미널(Bronx Terminal) 시장 재개발 사례를 들고 있다. 브롱스 터미널 시장은 1920년대에 만들어진 매우 오래된 시장으로 갈수록 쇠락해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곳에 있던 기존 소규모 식료품 상가들을 철거하고 대신 대형 할인점을 세우려는 한 개발업자의 계획을 뉴욕시 당국이 승인해 주었다. 하지만 기존 상가의 주인이나 종업원들은 졸지에 생계를 잃게 되었고, 그래서 이 개발 계획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법정 소송을 벌였다. 그러나 법정에서 패소했고 이 계획은 그대로 추진되었다. 법정에서는 이 개발 계획이 완성되면 이 지역의 물리적 개선 효과는 물론, 대형 할인점의 입주로 인한 경제적 기여가 크다는 점을 들어 이 계획이 중단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파인스타인

www.kci.go.kr

<표 2> 파인스타인이 제안한 도시 지역 차원에서 정의의 목록

○ 형평성 증진

1.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와 적합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새로운 주택 개발은 평균 이하 소득 가구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 서민 주택으로 지어진 주택은 영구적으로 서민 주택으로 남아야 하며, 나중에 새로 짓더라도 새로운 서민주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3. 특별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 발전 등의 목적으로 기업이나 가구의 입지를 타의에 의해 이전시켜서는 안 된다.
4.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피고용인의 이익과 함께 가능하면 중소기업의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한다. 보통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새로운 상업적 개발은 공공의 이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야만 하고, 가능하면 중소기업의 활력을 촉진해야한다.
5. 대형 프로젝트(mega project)는 저소득층에게 직접적 혜택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엄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만약 대형 프로젝트에 공공 보조금이 투입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도 공공이 개입하여야 한다. 대형 프로젝트는 가능한 점진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가능한 많은 다양한 개발 주체가 개입하여야 한다.
6. 도시 대중교통 요금은 저렴해야 한다. 저소득층들이 대중교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이용요금과 세금을 부과하고, 대중교통을 지원하여야 한다. 대중교통 노선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승용차를 이용해야만 하는 저소득층은 반드시 환급을 받아야 한다.
7. 계획가들은 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음과 동시에 이미 부자인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www.kci.go.kr

○ 다양성 증진

1. 도시에서 격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구역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다양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각 가구들을 일부러 이동시켜서도 안 된다.
2. 용도지역제(zoning)는 차별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며,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3. 도시 내부 구역들 간에는 단절된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되고 서로 교류 가능해야 한다.
4. 누구나 접근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이 공급한 공공 공간에서는 특히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 공공 공간에서 정치적 발언이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집단들은 같은 장소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5. 실천가능하고, 사람들이 원한다면 혼합적(mixed) 토지 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6. 공공 기관은 주거, 교육, 고용 등의 기회에서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던 집단들을 지원해야만 한다.

○ 민주주의 증진

1.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집단들은 그 옹호자에 의해 대변되어야 한다.
2. 만약 이미 개발된 지역에 대해 계획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이 계획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과 협의한 계획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의 미래에 대한 유일한 결정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 바깥에 사는 더 넓은 범위의 주민들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3. 아직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희소한 지역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이 계획의 영향을 받는 지역 바깥에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을 포함하여

www.kci.go.kr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굳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높은 수준의 참여를 기대할 필요는 없다. 포용적 의사결정의 목적은 공정하게 모든 집단을 대변하는 것이지, 참여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다.

출처: Fainstein, 2010: 172~175.

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이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개발업자와 외부 자본인 대형 할인점이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 대신 소규모 상가를 운영하던 자영업자들과 그 곳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Fanistein, 2009: 21~24). 이같이 정의롭지 못한 도시개발 사업이 자꾸만 이루어지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흔히 편익은 과장하고 비용은 축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Flyvbjerg et al., 2003). 또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서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도시에서 정의롭지 못한 영역이 발견되면, 다음 단계의 과제는 이러한 부정의를 해소하고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 운동과 정책이 제안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시 정부는 가능한 정의를 추구하는 도시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 일찍이 파인스타인은 정의의 개념에 의거한 "정의로운 도시(Just City)"를 계획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녀의 정의로운 도시 개념은 기존 도시계획에서 계획의 과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하버마스 류의 의사소통 패러다임과, 계획의 결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물리적 환경결정론적 패러다임 양자 모두를 극복하면서, 평등을 강조하는 정치경제학의 입장을 계획에 도입하자는 제안이었다(Fanistein, 2000). 최근 파인스타인은 도시나 지역 수준에서 정의의 구성요소로 형평성, 다양성, 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요소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도시나 지역 수준에서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

www.kci.go.kr

을 제안하고 있다(Fainstein, 2010: 172~175).

세계화에 따라 국가의 힘이 약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도시 정부보다 국가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다. 또 여기에 세계적 차원의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도시 차원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가에 대해 회의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의가 도시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면, 즉 도시 정책 결정을 둘러싼 담론이 도시 경쟁력보다 정의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상당히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물리적 개발에 따라 주민들이 타의에 의해 강제적으로 쫓겨나고 지역사회를 파괴되는 현상, 도시의 가용 재원이 집중 투여되지만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낭비적 대형 도시 프로젝트의 남발 등은 도시 정부 차원의 힘을 가지고도 막을 수가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 정부가 정의를 추구한다면 더 많은 것이 가능하다. 도시가 줄 수 있는 혜택을 도시의 다양한 계층과 주민들에게 보다 평등하게 분배하고, 활력 있고 접근 가능한 공공 영역을 확충하고, 도시 행정의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도시 행정이나 정치에서 소외된 집단을 위한 정책들을 더 많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권리 담론과 관련된 과제

독일의 법 철학자 예링은 일찍이 "투쟁은 법의 영원한 노동이다. 노동 없이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듯이 투쟁 없이 법은 없다. 투쟁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폰 예링 저, 윤철홍 옮김, 2007: 133).

이처럼 권리는 저절로 인정되지 않으며, 쉽게 제도화되는 것도 아니다. 권리를 가지지 못한 억압된 사람들에 의하여 권리가 요구되고 주장되지만, 기득권층이 그것을 쉽게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이나 투쟁을 통하여 사회적 의식이나 세력 관계가 변하면서, 권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결국 그 권리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

www.kci.go.kr

장되는 것이다. 법적 제도적으로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해도 끝은 아니다. 법과 제도에 명문화된 권리들이 사문화되지 않으려면 이 역시 지속적 노력과 투쟁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권리 담론과 관련된 과제는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누려야 할 권리의 목록과 그 내용을 확장 심화시키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 과제는 법과 제도상으로는 이미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사문화되어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과제는 아직까지 법과 제도상에 권리로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던 영역들을 도시 주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속에 새로 포함시켜 주는 일이다. 예를 들어 환경권이나 주거권 같은 권리가 우리나라 헌법에 엄연히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사문화되어 있는 권리라고 한다면,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권 같은 것은 새로운 권리 목록에 추가되어야 할 권리이다.

물론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 및 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와 단위는 여전히 국가이다. 하지만 국가가 아니라 도시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여지도 제법 있다. 1960년대 말에 재임했던 일본 혁신자치제의 상징인 동경도의 미노베 지사는 국가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이른바 시빌 미니멈(civil minimum)으로 지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을 동경도 도시행정의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일본 국가 기준보다 훨씬 높은 환경 기준을 동경도에 적용했고, 또 당시 일본 중앙정부도 하지 못했던 노인 의료비 무료화 정책 같은 복지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시민 권리 증진 정책이 일본의 다른 지자체에 속속 전파되면서 결국 일본 중앙정부가 국가 정책으로 수행하도록 추동했다(이지원, 1999). 1980년대 당시 노동당 시장 켄 리빙스턴이 이끌던 런던시 정부도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 정권에 맞서 런던에서 지방자치 사회주의(municipal socialism)를 시도했다. 당시 런던시는 대중교통요금 인하, 대중문화에 대한 지원, 시민들의 도시행정 참여 촉진 등 많은 진보적 정책을 추진했다(서영표, 2009).

최근 유엔 산하기관인 유네스코와 유엔-헤비타트는 "도시에 대한 권

www.kci.go.kr

<표 3> 미국의 도시에 대한 권리 연대가 채택한 12가지 권리 목록

1. 시장의 투기로부터 자유롭고 공동체 형성, 지속가능한 경제, 문화 및 정치 공간에 도움이 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권리
2. 공공 목적으로 활용되는 도시 영역에 대한 영구적인 공공 소유의 권리
3. 유색인종, 여성, 동성애자, 성 전환자에 속하는 노동자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4. 현재 선진국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토지에 대한 권리. 이 토지는 현 행정구역 경계나 도시적 혹은 농촌적 토지이용 실태와는 무관한 역사적·정신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5.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동네, 작업장, 치료와 보건에 대한 권리. 그리고 공장과 폐기물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곳을 배상받을 권리
6. 안전한 동네에 대한 권리. 그리고 역사적으로 공격대상이 되었던 유색인종, 여성, 동성애자, 성전환자들이 경찰, 이민당국, 민간조직 등으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보호 받을 권리
7. 인종, 종족, 시민권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지주, 이민당국, 고용주가 추방하겠다는 협박 없이 주택, 고용, 공공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의 권리
8. 유색인종이자 노동자계급으로 구성된 지역사회가 그들의 문화적·사회적 통합성을 유지하는 교통, 하부구조, 서비스를 누릴 권리
9. 우리가 거주하고 일하는 도시의 계획과 거버넌스에 관하여 완전한 투명성과 책임성 속에서 지역사회를 통제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여기에는 공공 정보에 대한 완전한 권리가 포함됨.
10. 유색인종이자 노동자계급으로 구성된 지역사회가 그 곳의 지역 경제를 착취하고 괴롭혔던 모든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제도들로부터 경제적 호혜성을 확보하고 부흥할 수 있는 권리
11. 국가의 개입 없이 국경 너머 도시들 사이에 연대를 형성하고 지원할

www.kci.go.kr

수 있는 권리
12. 환경 파괴 및 도시로 이주를 강요하는 경제적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경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지역사회를 누릴 농촌 주민들의 권리

출처: Marcuse, 2009: 247.

리" 증진 캠페인을 벌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도시에 대한 권리는 다음 세 가지를 지향하는 권리이다. 첫째, 모든 도시 거주자들을 위하여 도시의 잠재적 혜택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도시 수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모든 도시 거주자들의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셋째, 위 두 가지를 통해 도시 거주자들이 그들의 근본적 자유와 권리를 완전히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UNESCO et al., 2005: 4). 이러한 도시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민주주의와 도시 거버넌스 강조, 도시의 소외 집단에 대한 사회적 포용,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 증진, 물, 전기, 취사연료, 대중교통 같이 생존에 필수적인 도시 서비스에 대한 값싼 공급 등을 강조하고 있다(UNESCO et al., 2009: 27~35).

한편 2007년 미국의 "도시에 대한 권리 연대"에서는 다음과 같은 도시에 대한 열두 가지 권리 목록을 채택했다. 그 목록들은 앞의 표와 같다.

한편 해비타트 국제 연대(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에서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도시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주요 활동 목표로 삼고 있다.

이처럼 권리와 관련된 진보적 도시 연구의 과제는 시민들이 도시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의 목록을 확대시키고, 참여를 통해 시민들 스스로를 권리의 주체로 새롭게 자각하는데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담은 관련 제도와 정책을 구체화하는 일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권리 담론의 진보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 권리보다는 집단적 권리를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여러 권리 중에서도 특히 도시에서 사회적 약

www.kci.go.kr

<표 4> 해비타트 국제 연대의 다섯 가지 활동 목표

1.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고 풍족한 생계를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기회
2. 경제적 자원: 상속권, 토지 및 다른 재산에 대한 소유권, 신용, 자연자원, 적절한 기술을 포함- 에 대한 평등한 접근
3. 개인적, 정신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평등한 기회
4. 공공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에서 평등한 기회
5. 자연과 문화 자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평등한 권리와 의무

출처: Marcuse, 2009: 248.

자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수, 음식, 주택 등의 권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난하다고, 혹은 문화적 인종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특정 계급, 특정 계층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도시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라도 도시가 제공해 주는 혜택을 최대한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맺음말

얼마 전 모 재벌그룹 회장이 노동자를 야구 방망이로 폭행하고 이른바 "매 값"이라는 명분의 돈으로 문제를 적당히 무마하려는 사건이 폭로되었다. 이 사건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정의 관념에 반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진행되고 경험되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은 정의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고 은폐되거나, 드러나더라도 별 문제시 되지 않고 묵인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 도시 연구가 해야 할 일은 다양한 도시의 일상 사안들을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분석하는

www.kci.go.kr

것이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사안들을 폭로하고 이것의 개선을 도시 정책의 실천 과제로 요구하는 것이다. 권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우리 도시에서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들의 재산권, 개발업자의 개발권은 지나치게 보호받고 있는 반면, 세입자들의 주거권이나 서민들의 생존권, 장애인들의 이동권 등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계층이 지나친 특권을 행사하고 있고 어떤 권리들이 과도하게 인정받고 있는지, 그 반대로 어떤 계층은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어떤 권리들은 사문화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밝히는 작업과,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계층의 기득권이나 특권을 정의의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은 곧 기득권이나 특권이 작동하는 부정의한 사회적 과정을 해부하는 것과 동일한 작업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의와 권리의 개념을 진보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정의나 권리 개념에 충실하더라도 그 입장이 보수적 입장인지, 진보적 입장인지에 따라서 문제시 되는 대상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적 시각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도시 현실이, 진보적 시각에서 보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 덩어리로 보일 수도 있다.

현재 우리의 도시에서 일상적으로 차별과 배제, 억압과 소외가 발생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진보적 입장의 정의와 권리 담론의 힘은 증대될 것이다. 부정의가 만연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는 사회일수록 권리와 정의 담론은 그 자체로 대중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진보적 운동들과 정책들이 도시 단위에서 만들어 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미 우리는 비록 도시 단위의 운동이라고 보기는 곤란하지만 정의와 권리를 목표로 지향하는 다양한 실천 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경제정의를, '환경정의시민연대'에서는 환경정의와 공간정의를 운동의 목표로 추구해왔다. 권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엠네스티',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 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보편적 인권의 증진을 위한 활

www.kci.go.kr

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도시 단위에서도 주거권과 같은 도시적 차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운동들이 그동안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한국도시연구소', '주거권운동네트워크' 등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주거권쟁취운동이, '녹색교통운동',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등을 중심으로 보행권과 이동권 확보 운동이 전개되어 왔다. 최근 광주, 경남, 전북에서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인권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 운동들의 성과에 비해 정의와 권리 담론과 관련된 도시 연구자들의 학술적 성과들은 미약했다.[16]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의 도시 현실 및 관련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정의와 권리 담론을 다루는 연구들이 우리의 진보적 도시 연구에 보다 본격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담론 그 자체가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담론은 사회적 실천을 발생시키고 그 실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의 도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도시들에서 도시 경쟁력 강화나 도시의 성장과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이 도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정책이 정의의 기준에 합당한지, 혹은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상충되지는 않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나 성장과 개발을 선호하는 신자유주의적 담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적 도시 연구자들의 당면한 과제는 도시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권리를 확충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나 성장과 개발 촉진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설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설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 여가, 도시계획 등 도시

16) 우리나라에서 환경 정의와 관련해서는 제법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었지만(이인희, 2008; 최병두, 2010 등), 도시 분야에서 정의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변영진(1994), 윤혜정(1994), 조명래(2000)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다. 도시 분야에서 권리를 주제로 한 논의들도 거의 없었지만 최근 들어와 강현수(2009, 2010a 2010b)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www.kci.go.kr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진보적 입장의 정의와 권리 기준에 입각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이 발굴되고, 그 정책과 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정의와 권리가 우리나라 도시 정책의 핵심적 고려사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비드 하비의 주장처럼 우리가 어떤 도시를 원하는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으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도시와 우리의 삶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이다(Harvey and Potter, 2009: 45).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의가 실현되고, 권리가 확장 심화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그만큼 풍요로워 질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 없이는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보적 도시 연구자들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정의와 권리라는 이상적이면서도 추상적인 개념을 진보적 입장을 가지고 현재 우리의 도시라는 시공간적 맥락에 구체적으로 구현시키는 작업이다.

www.kci.go.kr

Abstract

A Comprehensive Review on the Pertinence and Benefits Justice and Rights Discourse in Contemporary Urban Studies

Kang, Hyun Soo

There are increasingly more and more social movements aimed at justice and rights in many cities around the world. Also, justice and rights discourses are influencing progressive urban academia. These trends seem to be a reaction against the force of neoliberal globalisation. In this paper, I review the background and main focus of justice and rights discourse in progressive urban studies, argue that justice and rights discourse is currently important and useful, and finally I propose ways in which these two respective types of discourse can be utilized to help improve building our cities.

Keywords: justice, rights, discourse, urban studies, The right to the city

www.kci.go.kr

참고문헌

강현수. 2009.「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운동의 흐름」. ≪공간과 사회≫ 통권 제32호, 41~88.

_____. 2010a.「권리와 정의 담론 및 관련 정책을 통해 지역 현장에서 조직된 주체」. 『5·18과 미완의 민주화 2010년 학술단체협의회 학술대회 자료집』.

_____. 2010b.『도시에 대한 권리-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변영진. 1994.「존 롤즈 사회정의론의 정책규범화에 관한 연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정책을 실례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샹탈 무페, 곽준혁. 2009.「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샹탈 무페 교수와의 대담」. ≪아세아 연구≫ 제52권 3호.

서영표. 2009.『런던 코뮌: 지방사회주의의 실험과 좌파 정치의 재구성』. 이매진.

윤혜정. 1994.「J. Rawls의 정의개념에 관한 시론 :도시계획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서울시정연구≫ 제2권 제2호, 83~99.

이인희. 2008.「환경 불평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 환경정의 연구의 연구쟁점과 연구경향」. ≪공간과 사회≫ 통권 제29호, 32~67.

이지원. 1999.「현대 일본의 자치개혁운동-혁신자치제와 시빌미니멈을 중심으로」. 서울대 사회학 박사학위논문.

장미경. 1999.「페미니스트 근대론자들－낸시 프레이저, 아이리스 영, 앤 필립스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 제43호, 154~174.

조명래. 2000.「공간의 정의와 생태문화운동: 용산기지 시민생태공원화 운동을 사례로」. ≪문화과학≫ 제24호, 297~322.

차성수. 1996.「권리 담론의 등장과 권리의 정치」. ≪지역사회연구≫ 제4집, 129~150.

최병두. 2010.『비판적 생태학과 환경정의』. 한울.

Bobbio, N. 1990. *Liberalism and Democracy*, Verso, <국역> 노르베르토 보비오 지음. 황주홍 옮김. 1992.『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문학과 지성.

Brenner, N. 2000. “The urban question as a scale question: reflections on Henri Lefebvre, urban theory and the politics of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24, No.2, 361~378.

Brennerk, N. and Theodore, N. 2002. “Cities and the geographies of ‘actually existing neoliberalism’.” *Antipode*, Vol.34, No.3, 356~386.

Campbell, H. 2006. “Just planning: the art of situated ethical judgement.”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Vol.26, No.1, 92~106.

Connolly, J. and Steil, J. 2009 “Introduction: Finding justice in the city.” in Marcuse, P. et al (eds.). 2009. *Searching for the Just City: Debates in Urban Theory and Practice*.

www.kci.go.kr

Routledge.

Dikeç, M. 2002. “Police, politics, and the right to the city.” *Geojournal*, Vol.58, No.2-3, 91~98.

_____. 2001. “Justice and the spatial imagin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33, No.10, 1785~1805.

Fainstein, S. 2000. “New directions in planning theory.” *Urban Affairs Reviews*, Vol.35, No.4, 451~478.

_____. 2010. *The Just City*. Cornell University Press.

_____. 2009. “Planning and the just city.” in Marcuse, P. et al (eds.). 2009. *Searching for the Just City: Debates in Urban Theory and Practice*. Routledge.

Faulks, K. 2000. *Citizenship*. Routledge. <국역> 키이스 포크. 이병천 외 옮김. 2009. 『시민정치론 강의: 시티즌십』. 아르케.

Flyvbjerg, B. et al. 2003. *Megaprojects and Risk: An Anatomy of Amb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Fraser, N. 1995. “From redistribution to recognition? Dilemmas of justice in a ‘Postsocialist’ age.” *New Left Review*, No.212, 68~93.

_____. 1998. “Social justice in the age of identity politics: redistribution, recognition and participation.”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Vol.19, University of Utah Press.

_____. 2005. “Reframing justice in a globalizing world.” *New Left Review*, No.36.

_____. 2008. *Scales of justice: Reimagining political space in a globalizing world*. Columbia University Press. <국역> 낸시 프레이저 지음. 김원식 역. 2010. 『지구화 시대의 정의: 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그린비.

_____. 2009. “Feminism, capitalism, and the cunning of history.” *New Left Review*, No. 56.

Fredman, S. 2008. *Human Rights Transformed: Positive Rights and Positive Du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국역> 샌드라 프레드먼. 조효제 옮김. 2009. 『인권의 대전환—인권 공화국을 위한 법과 국가의 역할』. 교양인.

Friedmann, J. 1987. “The right to the city.” *Development Dialogue*, Vol.1, pp.135~151.

_____. 2002. *The Prospect of Cities*. Univ. of Minnesota Press.

Harvey, D. 1973. *Social Justice and the Cit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국역> 데이비드 하비 저. 최병두 역. 1983. 『사회정의와 도시』. 종로서적출판부.

_____. 1992. “Social justice, postmodernism and the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16, No.4, 588~601.

_____. 1996.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Oxford: Blackwell.

_____. 2000. *Spaces of Hope*. Univ. of California Press. <국역> 데이비드 하비 저. 최병두

www.kci.go.kr

외 역. 2001.『희망의 공간』. 한울.

_____. 2003. "Debates and developments: the right to the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27, No.4, 939~941.

_____. 2008. "The Right to the City." *New Left Review*, No.53.

_____. 2009. *Social Justice and the City*. University of Georgia Press; Revised edition.

Harvey, D. and Potter C. 2009. "The Right to the Just City." in Marcuse, P. (ed.). 2009. *Searching for the Just City: Debates in Urban Theory and Practice*. Routledge.

Henderson, G. and Waterstone, M. (ed). 2009. *Geographic Thought: A Praxis Perspective*. Routledge.

Holston, J. 2001. "Urban citizenship and globalization." In Allen J. Scott (ed.). *Global City-Regions: Trends, Theory,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325~348.

Jhering, R. 1946. *Der Kampf um das Recht*. <국역> 루돌프 폰 예링 저. 윤철홍 옮김. 2007.『권리를 위한 투쟁』. 책세상.

Laclau E. and Mouffe, C. 1985.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국역> 어네스토 라클라우 상탈 무페 저. 김성기 외 역. 1990.『사회변혁과 헤게모니』. 도서출판 터.

Lefebvre, H. 1968. *Le droit* à *la ville*. Paris: Anthropos, Kofman, E. and Lebas, E. (eds and translators). 1996. *Writings on Citie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_____. 1973. *Espace et politique. - Le droit* à *la ville II*. Paris: Anthropos.

_____. 1974. *La production de l'space*. Paris: Anthropos. <English translation> 1991. (Translated by Donald Nicholson Smith) *The Production of Space*. Cambridge, MA. Blackwell.

Marcuse P. 2009. "Postscript: Beyond the just city to the right to the city." in Marcuse, P. et al (eds.). 2009. *Searching for the Just City: Debates in Urban Theory and Practice*. Routledge.

Marcuse, P. et al. (eds.). 2009. *Searching for the Just City: Debates in Urban Theory and Practice*. Routledge.

Mitchell, D. 2003. *The Right to the City: Social justice and the fight for public space*. New York, London: The Guilford Press.

Mouffe, C. 1992. "Democratic citizenship and the political community." in C. Mouffe (ed). *Dimensions of Radical Democracy*. New York: Verso.

Nozick, R. 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국역> 로버트 노직. 남경희 옮김. 2000.『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문학과 지성사.

Peffer R. G. 1990. *Marxism, Morality and Social Justice*. Princeton Univ. Press.

Polanyi, K.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국역> 칼 폴라니 지음. 홍기빈 옮김. 2009.『거대한 전환—우리 시대의 정치

www.kci.go.kr

경제적 기원』.

Purcell, M. 2008. *Recapturing Democracy: Neoliberalization and the struggle for alternative urban futures*. Routledge.

_____. 2002. "Excavating Lefebvre: the right to the city and its urban politics of the inhabitant." *Geojournal*, Vol.58, pp.99~108.

_____. 2003. "Citizenship and the right to the global city: reimagining the capitalist world order."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27, no.3, pp. 564~590.

Rawls, J. A 1971. *Theory of Justic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 Press <국역> 존 롤즈. 황경식 역. 2003.『정의론』. 이학사.

Sandel, M. 1982.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2009.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Farrar, Straus and Giroux <국역> 마이클 샌델 저. 이창신 역. 2010.『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Sen, 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2009. *The Idea of Justice*. Belknap Press.

Smith D. M. 1994. *Geography and social justice*. Oxford: Blackwell.

_____. 2000a. "Moral Progress in human geography: transcending the place of good fortun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24, No.1, pp.1~18.

_____. 2000b. "Social Justice Revisited."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32, No.7, pp.1149~1162,

_____. 2000c. *Moral Geographies. Ethics in a World of Difference*, Edinburgh University Press

Soja, E. W. 2010. *Seeking Spatial Justice*. Univ Of Minnesota Press.

UNESCO, UN-HABITAT, ISS. 2005. *Discussion Paper: Urban Policies and the Right to the City*.

UNESCO·UN-HABITAT. 2009. *Urban Policies and the Right to the City-Rights, Responsibilities and Citizenship*.

United Nations.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인터넷 접속은 http://www.un.org/en/documents/udhr/index.shtml, 유엔인권선언 한국어판은 (http:// www.ohchr.org /EN/ UDHR/Pages/Language.aspx?LangID=kkn)].

Walzer, M. 1983. *Spheres Of Justice: A Defense Of Pluralism And Equality*. Basic Books. <국역> 마이클 왈쩌. 정원섭 외 역. 1999.『정의와 다원적 평등』. 철학과 현실사.

Young, I. 1986. "The Ideal of Community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Social Theory and Practice*, Vol.12, No.1, pp.1~26.

_____. 1989. "Polity and Group Difference: A Critique of the Ideal of Universal Citizenship." *Ethics*, Vol.99, No.2, pp.250~274.

_____. 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Univ. Press.

_____. 2000. *Inclusion and Democracy*. Oxford. Univ. Press.

www.kci.go.kr

논문투고일 2011.2.13
논문수정일 2011.3.8
게재확정일 2011.3.11

www.kci.go.kr